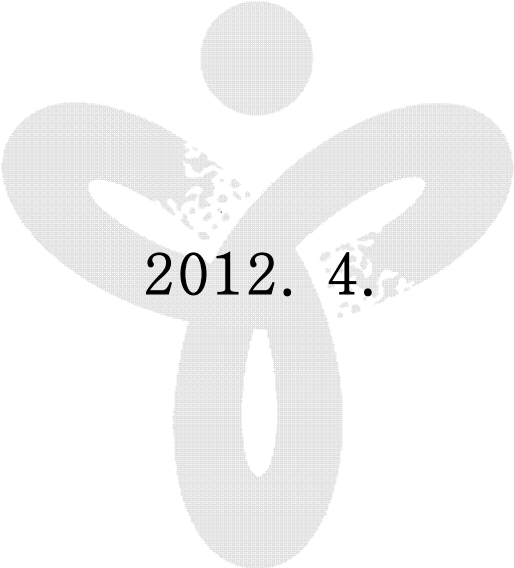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012. 4.

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차 례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1
■ 서울 학생인권조례 해설	
제1장 총 칙	9
제2장 학생인권	16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17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25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35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41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50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55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59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62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6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68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71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72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76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80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82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84
제4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86
제5장 보칙	92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전문	84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1. 자기 삶의 주체로서의 학생

1989년 11월 20일 UN총회가 채택하고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으며 양육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의 주체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아동들은 의무교육을 받으며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우정과 평화, 형제애의 정신으로 양육되고 또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한다는 어린이현장의 길잡이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는 때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주역을 길러내었다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대학 입학시험 경쟁으로 인하여 교과과정에서의 학습능력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또 서열화하는 한편 학생을 피동적인 교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인정받고 또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라는 명분으로 휴식할 틈은 물론 자신의 현재를 반성하고 내일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웠다. 또한 학생들이 체벌이나 각종의 언어폭력,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두발·용모의 강요 등 수많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비판하여 자살하거나 부적응한 채 교사와 다른 동료학생들에게 분노와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조건이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에 적절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무한 경쟁으로 일관하는 학교교육



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계발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식과 경험과 배려와 돌봄을 행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학교현실에 대한 전환을 촉구한다. 학교교육이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을 목표로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세계 인권 규범들과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들이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언제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과 사회와 국가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며 격려해야 한다.

2. 학교생활 및 학교교육의 새로운 지평 제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한 구성원이자 인간으로서의 학생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그 유형과 내용별로 체계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조문화 하였다. 무엇이 학생의 자유와 권리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살피보고 반성하며 또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학교나 교사, 다른 학생 또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지원과 배려와 돌봄의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이 공허한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존중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학교생활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한편, 학교공동체의 질서와 다른 교사, 학생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학생의 책무 또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인권이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책무를 찾아 실천하는 윤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



리고 이런 윤리를 통하여 평화롭고도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워 「학생의 권리 대 학교·교사의 의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획일과 타율 등의 비인간화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조례의 규율대상이 “학생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그 주된 권리주체는 학생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을 키워내고자 하는 교육의 기본이념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목적이다. 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공동체의 책무와 그 지원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의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배려의 구조 속에서 재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의 자유는 끝난다”고 하는 저 유명한 법률속담은 모든 권리장전을 떠받치는 초석이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은 그 학생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책무로 이어진다. 아동으로서의 학생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벌의 전면적 금지 정책으로 학교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그에 대한 찬반 양론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교권과 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 주고 있다. 학생이 미성숙하기에 규율과 훈육의 객체로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기에 보다 많은 경험과 실수와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3. 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기본적 지향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구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인권이 학생들도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들을 정리하는 한편, 이 자유와 권리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이념을 이어받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권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장하여야 할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보장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담고 있다. 모든 학생은 학업성적이나 가족의 경제수준, 혹은 가족형태 등에 따른 구분이나 차별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일구어나갈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은 모든 인권의 핵심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미성숙하다’라는 평가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그들은 ‘미성숙’한 시민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시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특별히 존중받고 또 배려되어야 한다. 조례가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은 이런 요청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공포와 폭력,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자신의 의지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격을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최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원조하는 것, 그럼으로써 삶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1) 소극적 인권에서 적극적 인권으로

조례는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발전을 향해 열려 있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만큼, 인권규정은 외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상태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중심



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인권규정들은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소극적인 규정 방식에서 벗어나 “~할 자유(혹은 권리)를 가진다.” 라는 적극적 규정방식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2) 선언적 인권에서 실천적 인권으로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 천부인권 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다보면 인권보장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흡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일차적으로는 학생인권의 목록들을 정리하여 선언하는 한편,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학교현실에서 최적의 형태로 실천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제시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 자유·권리의 실천을 위하여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평가, 그 집행의 과정을 주도하는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학생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대립적 인권에서 협력적 인권으로

학생인권은 학교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보장된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에서 보장되며 이를 위해 학교장, 교사, 다른 학생은 물론 교육감이나 학부모 등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또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학생인권이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누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meone)’라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에 대한 혹은 모두와 함께 하는 자유(Freedom to and with everyone)’라는 구조를 지향한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종래 대부분의 인권선언이나 권리장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자-침해자의 모델”을 탈피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모델”로 구상되어 있다.

(4) 피동적·억제적 인권에서 능동적·참여적 인권으로

학생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려와 보호의 수혜자가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학생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발해 나가는 인간으로 상정한다. 그들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시민일 따름이며,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제반의 자유와 권리



를 자율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학생의 인권에는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의 하나이며 자기 나름의 학교생활을 구성하고 또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학생에게 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의사결정과정에 유효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5) 개별적·미시적 인권에서 종합적·거시적 인권으로

인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그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실천, 그리고 사후적인 평가와 교정이 필요하다. 어느 한 순간 인권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노력과 희생과 투자를 거쳐야만 인권은 비로소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학교에서의 인권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인권보장과 교육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를 개선하는데 작용하는 장애나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누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 요청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기를 나누어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인권의 실태조사 및 평가, 최적의 상태로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 사후적인 평가와 교정 등의 과정을 설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요구한다. 적절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실천에 필요한 자기희생의 윤리를 감내하고자 할 때 인권의 보장은 제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 훈육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의 관계로 이행하여야 하는 우리 학교의 경우 이러한 요청은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인권교육요원들의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권의지와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4.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열쇠말

아래에 열거한 10가지의 열쇠말은 UN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규범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들을 학생인권조례로 재구성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방향들이다.

열쇠말	설명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속에서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2. 참여와 결정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아동의 의미 있는 참여는 아동의 권리'이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아동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아서 안 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친화적인 학교	아동은 배우는 능력을 타고 났지만 아동의 학습 능력은 손상되고 때로 파괴될 수 있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아동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한다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으로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아동은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책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동은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열쇠말 5는 열쇠말 2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6. 아동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학교는 아동의 학습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총체적 삶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 아동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는 것이다.
7.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존중하는 학교	아동의 각 권리는 전체 맥락과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강화·보완·통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열쇠말 5는 열쇠말 7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회권적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열쇠말	설명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아동 권리의 이행에는 아동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관련되는 곳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교육의 물질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로 어떤 능동적인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10. 권리구제가 보장되는 학교	아동이 갖는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해설

제1장 총칙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서울시의 교육 자치 규범이며, 학생 인권의 실현을 통해 소통과 자율,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나아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조약 등 상위 법규범에 근거를 두고, 학생을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학생들이 학습, 자유, 참여, 복지, 평등 등 제반의 학교생활 관계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게 하는 학생인권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총칙)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제1조)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개념정의(제2조)를 규정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제3조)과 그 인권보장에 수반되는 다양한 책무(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목 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학생인권조례 제1조는 조례의 근거법령과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학생인권의 보장이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자치입법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1조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그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 보장에 있어 학생들도 예외일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제1항)라고 하여 학생인권의 존중과 보호는 교육의 기본적 토대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으며, 학생 또한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하여 자신의 인권에 상응하는 책무와 의무를 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하여 학생의 보호자가 저야 하는 책무를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2007년 12월 신설되어 2008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의



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지금까지 193개의 국가와 정부에 의해 비준되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비준하여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 6조제1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규범으로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이 아동 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일반원칙은 협약의 전반적인 해석 지침이자 모든 권리 영역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일반원칙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동인권에 대한 원칙	
학생인권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확보(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이라는 의미에서 “발달”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한다.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해설 학생인권조례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 6호에서 학생인권은 헌법, 법률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학생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헌법과 법률,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항목	관련법령 및 근거
용어의 정의	<p>「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의미한다.</p> <p>「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은 위에서 제시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교장, 교감 및 교사이며, 제2항의 ‘직원’ 은 교원 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을 의미한다.</p> <p>「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를 의미합니다.</p>

3.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해설

제3조는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인권이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선언하는 한편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제1항은 학생인권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에 대해 보장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규범임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어른에 비해 권리를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되 배우고 익히는 시민이며 바로 이 때문에 학생의 인권은 어른의 인권보다 우선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른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인권보다 먼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학교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또한 다른 이익보다 먼저 학생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2항은 학생인권의 내용이나 항목 중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설령 학생인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처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경시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혹은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 나가면서 미처 알지 못 했던 학생인권 항목들이 나타나는 경우 그 때에도 그 인권항목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제3항은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학내 질서의 유지나 다른 사람들의 학습권 혹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규정으로써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한이 지나쳐서 학생의 인권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게끔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제정하더라도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즉 「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칙이다.

4. 책무

-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제4조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는 주체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부모 등의 보호자 그리고 학생 자신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항은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그 인권의 보장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인권과 인격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은 타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장될 수 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그치게 된다’라는 법률 격언은 이를 의미한다. 이에 인권간의 충돌이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정의롭게 조정하고 균형 잡을 수 있는 규범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5항은 학생 스스로 인권을 학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은 학교 교육에 협력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학교규범의 제정에 참여하고 그렇게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할 책무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의무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3조는 보호자의 아동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학교 교육에서의 보호자 의견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 학생인권

제2장(학생인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 목록을 10개의 절로 구분하고 각 절마다 하위 조문을 두고 있다. 학생 인권의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그동안 학생 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조례는 학생 인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의 신장과 교사와 학생의 신뢰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1절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차별금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들 법규범들에서는 이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자,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다루고 있다. 조례에서는 이러한 법원칙을 이어받아 학생들을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학생들은 그러한 차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등 총 21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차별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여기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유로도 자의적인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제2항은 학교설립자 등에 대하여 차별받고 있거나 혹은 과거 차별을 받은 적이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다양성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환경과 문화가 갖추어질 때 꽃필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차별이라 함은 집단이나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위협이나 괴롭힘, 모욕적인 언행도 차별에 해당한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차별 없이 대하고, 차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의 결정이나 구성원의 언행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성적 지향이라 함은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감정적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방향성)를 말한다. 이성, 동성, 양성, 무성 등 성적 지향을 바탕으로 성적 주체성이 확립된 상태를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이라고 한다. 반면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 함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무엇이든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별 금지 조항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4. 본 조항에 열거된 차별 금지 사유들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금지된다.

5.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구성원의 차별 감수성을 증진하며, 학교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는 등 별도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차별금지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차별금지	<p>[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4조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p> <p>【판례】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구체화한 것임. ◎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는 규정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라고 함 (헌재 1989. 01. 25, 89헌가7).</p>



◆ 성적에 의한 차별

모든 학생은 성적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시설 이용 전반에서 성적을 이유로 학생을 우대 비교하거나 학생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성적에 의한 차별	<p>[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p> <p>[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p> <p>[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 결정례 08진차 158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 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p> <p>◎ 국가인권위 결정례 09진차 1194 -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p>

◆ 성별에 의한 차별

모든 학생은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학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거나 한쪽 성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성별에 의한 차별	<p>[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p> <p>【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9진차535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다.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중단→취업의 어려움→빈곤→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p>

◆ 사회·경제적 환경(가족환경) 등에 따른 차별

모든 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 형편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를 존중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정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하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한부모가정', '애비 없는 자식' 등 차별적인 언어 사용 등은 없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사회·경제적 환경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결정례】 ◎ 국가인권위 08 진인 4760-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교사 인권교육 실시(자체)권고</p>

◆ 장애 학생 차별

장애 학생은 차별 없이 학교교육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장애학생의 입학·전학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고,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시설이나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 학생의 전·입학을 거부, 회피해서는 안 된다. 통학에 필요한 교통편의도 제공되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장애학생 차별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p>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p> <p>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장애인복지법] 제20조 (교육)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418 -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장애인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통로이다. -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을 일반학교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욕구를 지원하면서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정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학급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먼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p> <p>◎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116, 08진차117 병합 결정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p>

◆ 소수자 차별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이주민 학생이 폭력이나 위협, 따돌림,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주민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문화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이주민 학생과 다른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동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성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관계에 대한 중단 요구, 심리적 압박, 특정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폭력, 따돌림 등을 중단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성소수자 이해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소수자 차별	<p>[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7조</p> <p>◎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2003년 -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동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혹은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제2조)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근거에는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도 포함된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p> <p>◎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20, 2009년 - 당사국들은 개인의 성적 지향 때문에 ... 이 규약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768600 결정 - B형 간염은 기숙사 생활, 군 내무반 등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p> <p>◎ 국가인권위원회 2011.2.1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 적지 않은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한국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소외, 발음 놀림, 피부색 놀림, 모국 비하 등의 차별을 당하고, 협박, 소지품 강탈, 구타 등의 침해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예로 이주아동은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등의 모국 비하, ‘너희 나라로 돌아가’, ‘신고하겠다’ 는 등의 협박, 무시와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p>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해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몸의 안전과 자유, 인격 등을 위협받는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도 깨지게 된다. 학교 구성원 누구든 가혹하고 모욕적인 폭력을 타인에게 행사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과 규정이 존재하나, 이 조례는 ‘학생 간 폭력’뿐 아니라 관리자·교직원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폭력,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학생 스스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 **체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의 방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인 체벌은 제외된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체벌 없는 학교’는 이미 교과부의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면해 주는 방식으로 체벌 사건을 다루고 있다.

조례가 금지하는 체벌의 범주는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동작을 강요하여 고통을 가하는 기합 형태의 행위’, ‘학생들끼리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등 이다.

다만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즉시 제재하고, 갈등 상황에서 분리하는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은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나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등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 방법은 체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배부한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학교별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체벌	<p>[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p> <p>[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p>
	<p>【해 석】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8은 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함. - 동 협약 제37조는 당사국들이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제19조에서 보완되고 부연되었는데, 동조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이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함. - 또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아동에 대한 여하한 수준의 폭력의 합법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고,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의 형태이며, 국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 동 협약 제28조제2항에 대하여 “동조는 학교규율을 언급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함.</p>
	<p>【판례】 ◎ 헌재 2006.07.27, 2005 헌마1189 - 헌법재판소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체벌의 불가피성,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하였음.</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결정례】 ◎ 국가인권위 결정(10진정313700) -체벌은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당사자인 학생들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 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이 크므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하는 것은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임. - 관련 결정 : 진인2659, 2660, 2793</p>

◆ 언어폭력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언어폭력	<p>[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결정례】 ◎ 국가인권위 결정(10진정 313700) -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킁킁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바...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p>

◆ 학교폭력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학교 환경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감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나 관련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학교 폭력 방지 의무	<p>【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p>
	<p>【판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있어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 60588 판결, 2001.4.24. 선고 2001다5760 판결 참조)</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06 진인 943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의무(주의의무 있음)</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p> <p>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 굿바이! 학교폭력(교과부, 법무부, 2009.9) -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서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사과문이나 각서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등을 배상토록 한 후 사건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학교폭력이 조직적 혹은 지속적으로 행해졌거나 피해사실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의 비인격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과 욕구불만 요인을 찾아내어 조치를 취하여만 차후의 더 큰 폭력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여도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자치위원회 심의</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hr/> <p>◎ 굿바이! 학교폭력(교과부, 법무부, 2009.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자치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조치는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의 심의 없이 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설사 당해학교의 교칙, 선도규정, 또는 학생생활지도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다. 선도위원회와 자치위원회는 그 성격과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사건을 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p>
<p>가·피해 학생 조치</p>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p> <p>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p> <p>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p> <p>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 요청에 대해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17조 제6항)</p> <p>◎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조치(굿바이!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6조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하여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된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 굿바이! 학교폭력(교과부, 법무부, 2009.9)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조치에서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중 어느 한쪽에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 **성폭력**

학생은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와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껴안는 등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존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학교는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하여야 하며, 평등한 성문화 조성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성폭력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p> <p>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제22조의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
 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내 과속 방지 시설 등 안전설비 점검, 체육시설·놀이 기구 등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하교길 위험 요인 제거, 안전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학교 내 안전사고의 원인을 학생의 부주의 문제로만 축소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업시간 외 운동장 이용 금지 등 학생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학생들의 휴식할 권리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은 사전 안전교육, 안전 장치 구비와 안전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안전 시스템의 점검이 필수적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는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안전사고	<p>[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p> <p>[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p> <p>[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p> <p>[학교보건법]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p>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학칙과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유엔에서는 학습권의 4대 요소(4A)로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용성(Adaptability)을 제시한 바 있다. 가용성은 교육기관이 이용 가능한 거리나 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함을, 접근성은 차별 없는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장벽 등을 제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용성은 학습의 형태나 내용, 시간이나 양 등이 학생이 육체적·정신적·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어야 함을, 적용성은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 배움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조례의 제2항 ~ 제6항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학습권의 본질적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체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단순 저임 노동력의 활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나 과로로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난 바 있다. 학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실습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습업체의 노동기준과 안전설비,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세심하게 살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경쟁적 교육 풍토가 학생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연거푸 지적한 바 있다. 경쟁적 교육 풍토는 학생들이 동등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데도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제5항과 제6항은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부추겨지지 않는지,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보장·제공되고 있는지, 과도한 선행학습이 요구되지 않는지를 살펴 학생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방식이 지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특별히 교과수업)이나 야간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진로 개발에 필요할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야간 학습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으나,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학부모인 만큼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권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의 권리이고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학습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의논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종적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지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생의 관심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금지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 style="text-align: center;">자율학습/ 방과후 학교</p>	<p>◎ 국가인권위 결정례 09진인 3240</p> <p>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시킬 경우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일탈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자율학습 참여를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28조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p>



-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휴식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며, 감당할 만한 교육은 학습권 실현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학습시간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놀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할 권리도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휴식권	<p>【판례】</p> <p>◎ 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8 헌마 635 결정</p> <p>헌법재판소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면시간을 확보하려는 등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p>

-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해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1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생활의 향유는 문화를 창작할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를 즐길 권리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간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는 학교 축제 기획,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한 문화 프로그램, 창작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창조성, 예술성 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 의견의 수렴이 중요하고,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문화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 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단으로 복장 두발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특정한 복장이나 두발 양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학습권에 명백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학교에서 용모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법리와 사회적 합의가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다.

본 조항은 복장, 두발 등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용모의 제한으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에서는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복장 및 두발규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소모적인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의 소지였다는 점에서 조례는 두발, 복장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과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이 대체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학생들의 탈선과 문제행동은 줄어들 것이다.

흔히 자유화라고 하면 학생들이 염색을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이다. 자유화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머리 모양이나 복장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각자 자기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몸과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복장의 경우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목적 하에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두발이나 복장 등의 용모가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교육적 지도나 상담, 혹은 집단토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두발 복장</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동 시행령 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훈육의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함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반영 의무화 ※ 제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9호 학칙개정절차 - 제7호~제9호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의 제.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학교규칙으로 정함(제9호 학칙개정절차)</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자 05진차 204,145,119(병합)결정 <결정요지> -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제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p>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아의 독립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학교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기에, 집단생활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제2항은 학생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해치는 물건을 소지했음이 명백하고, 그것을 사용한 위해의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교직원은 학교 규칙에 의거해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에도 교직원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일기검사의 경우 학생 생활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내면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쓰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기는 기록이나 내면의 성찰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대신에 생활교육을 위한 일기장 검사는 학생과 교사의 대화 시간을 늘리거나 대화장 쓰기로 전환하고, 글쓰기 교육을 위한 일기장 검사는 생활글쓰기 교육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pmp,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현대사회에서 통신 및 호신, 여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통신, 대인관계 형성, 취미 활동, 호신 수단 등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소지 자체의 금지 등 엄격한 규제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자기기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고 시간·장소에 따라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는 과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을 어긴 경우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사생활 존중, 안전한 귀가 등을 위하여 당일 본인에게 전자기기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력이나 도난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CCTV는 학생이나 교사의 행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악용되거나 구성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참고하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제6항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존중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호감, 사랑, 우정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은 성숙의 동반자이다. 학생의 사적 관계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문제행동으로 치부하는 등 부당한 간섭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성숙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물론 학생이 상대방과 서로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관계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안내, 지원하는 일은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일기장 검사	<p>[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휴대폰 사용 금지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 진정 298600</p> <p>-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p> <p>- 피진정 기관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에 따른 경우 피진정 기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지만, 피진정 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를 하는 학부모 등이나 전화를 받는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p>
소지품 압수	<p>[국가인권위원회 권고]</p> <p>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 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권고</p>
CCTV	<p>‘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음.</p> <p>[개인정보보호법]</p>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가 타인에게 함부로 누설되고 그로 인해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제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표에 기재된 성명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교외에서까지 이름표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식 명찰을 지양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이름표를 사용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개인정보 보호	<p>【판례】</p> <p>◎ 헌법재판소 헌재 2005. 5. 26. 99 헌마 513 결정</p> <p>-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 1542, 1543, 1545, 1546, 1548(병합)결정</p> <p>-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p> <p>-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p>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자신은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학생이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적뿐 아니라 급식, 보건, 교원 현황, 교육과정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학교 예산을 포함하여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학생의 참여와 자치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 내용을 학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개인정보 열람	<p>[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 국가인권위원회 2003.5.12.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개선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 중지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해설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서는 ‘어떤 개인이 형성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이란 학생이 가진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조례에서도 학생이 특정한 생각을 강요당하거나 양심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제2항은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으나 억지로 반성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는 행위, 학생의 자기 성찰과 교사의 교육적 소통이 사라진 억지의 반성문, 진술서,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비교육적 행위이기도 하다.

제3항은 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이 종교 과목을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종교 과목 수업이나 종교 교육에 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제3항 제4호는 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신앙여부로 자치 활동 참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종교 과목 편성 및 종교활동 관련 교과부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9-41호)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2008.04.15)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에 종교 과목 복수 편성과 정규교과 외 종교활동에 학생 자율 참여 원칙을 포함하여 안내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종교의 자유	<p>【판례】</p> <p>◎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p> <p>-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p> <p>-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p> <p>-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p>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또는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된 의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의 의사 표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을 수 있다.

서명활동, 설문조사, 교내 언론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 학생의 의사 표현의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의사 표현은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집회 개최로 일정한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학교 안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돼 있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다양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표현의 자유	<p>【판례】</p> <p>◎ 헌법재판소 결정(2009.9.24.자 2008헌가25 결정)</p> <p>-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우선,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 배제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는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p> <p>-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p>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다. 자치활동의 권리는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 학생 자치 활동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다. 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간섭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피고 학생의 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피선거권을 성적 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학생 자치 조직의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 조직은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행사를 개최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연합 활동권, 담당 교사 추천권 등을 가진다.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당연히 학생 자치 조직의 설립과 가입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해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보살핌은 학생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반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 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실효적인 방안으로써 기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 시민의 육성에 있음에 유념하면서, 학생의 미성숙과 같은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학생 참여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참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조례는 학생이 학생회 등 자치 조직을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칙은 학교 내 자치 규범으로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생 대표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규정 제·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가동시켜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학생의 의견과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이 조례 12조에 규정된 복장 규정, 13조에 규정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규정, 17조에 규정된 집회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조례는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와 교육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와 교육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에 걸맞은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책임 의식 또한 길러질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권리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사와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장치(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사용,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함 설치, 설문조사,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정례적인 학생대표와의 만남,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등)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조례의 제3장에 규정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이다.

형식적, 명목적, 장식적 참여는 참여가 아니다. 참여는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좌절되지 않을 때 더욱 활성화된다. 학생의 참여는 참여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여를 통해 개진된 학생 의견을 학교정책 수립이나 학교규칙 제·개정 등의 과정에서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정책결정참여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교육 받을 권리'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명문화한 내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된다. 특히 빈곤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 등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포함한 여러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에 특별한 교육적 돌봄과 지원이 요청된다. 이 조항은 상담과 같은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구체적 제도 수립 및 정비,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과의 협조, 보호자 교육 및 보호자의 참여 협력 유도 프로그램 개발 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보호자 참여 협력 프로그램 운용 규정은 학생지도에 있어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다시 학생의 인권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각종 소음 및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도 아울러 의미하고 있다. 또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비치 및 공간 확보는 학생을 위한 문화적 환경 구축에 해당한다. 또 학생들의 탈의 공간 및 휴게공간의 마련은 학생의 인격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급식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인권으로서 선언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먹을 권리는 중요하다. 또한 친환경 급식, 직영급식, 의무 교육과정에서의 무상 급식 노력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급식에 대한 권리는 급식을 단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급식에 대한 권리는 급식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학생의 의견 존중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사회·경제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 무상교육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무상 급식은 학생의 학습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의가 있다.

-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1항에 의거하여 학생 건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이나 수업 불참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여학생의 권리를 조례 수준에서 명문화하였다. 지금도 생리공결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권리는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건강 증진을 이유로 한 보건사업을 실시하더라도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학생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조치, 전문적 진단 없는 등교 정지 조치,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강제적 의료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학교는 일차적, 응급적인 치료가 가능한 요건인 보건실과 보건교사,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하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 지역 학교에 보건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을 내릴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징계 처분 중 퇴학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재심청구)에 명시된 재심, 행정심판을 차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학생이 폭력이나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인격을 존중받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는 학생의 나이와 성별, 성적 지향, 인종·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가적인 피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징계사유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등을 통해 징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는 반면, 이 조항에서는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추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징계의 심의 기구는 학교 측이나 학생 측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 통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적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학생의 징계가 처벌이나 응징 자체가 아니라 대상 학생의 성찰, 회복,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징계를 공고하지 않도록 한 것도 징계의 목표가 회복과 복귀에 있기에 요청되는 것이다. 학교는 징계 이후 학생의 심리적 위축, 학습 결손, 관계 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법적 징계뿐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여타의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의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지 사려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불가피하게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벌점의 기준과 절차, 부과 방법, 대상 학생의 소명 방식 등에 있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해야 한다.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징계 절차	<p>[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p>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p> <p>④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⑤제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p>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전학권고</p>	<p>【결정례】</p> <p>◎ 국가인권위원회 2008.4.3자 07진인2330 결정</p> <p>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00도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및 00교육감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p>
<p>벌점에 의한 퇴학</p>	<p>【지침】</p> <p>○ 학생의 벌점 누적을 근거로 강제 전학이나 퇴학(고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양(책임교육과-6883)</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2008. 4. 3. 자 07진인 2330</p>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절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00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p>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p>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인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p>
<p>각서 작성</p>	<p>【결정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6진인3067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별교육 이수에 처하면서 진정인의 학부모로부터 차후 교칙을 한 건이라도 위반할 시에는 학생선도협의회 협의 없이 퇴학처분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 실제로 진정인이 교칙을 위반하자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퇴학처분한 바, 이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로 퇴학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위와 같은 징계절차 위반은 학생징계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아니라 헌법 제 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바, 피진정인의 주장을 볼때 퇴학처분시 위와 같은 임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00고등학교의 관행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 할 것과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p>
<p>학생징계 재심의</p>	<p>◎ 학교폭력 가이드 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학생에 대해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수정 처리 또는 거부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수정 처리 또는거부가 가능하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가 그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당해조치를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자치위원회는 당해사항에 대해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된 인권이 충분히 실현된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법률이나 명령, 지침 등에 따르지 않고 인권의 보편적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의 중지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누린다. 본 조항은 제27조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이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이 부당한 힘의 행사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제보, 증언, 증거물 제출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헌법 제26조에 의해서 보장된 청원권을 학생의 인권으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 마련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청원권을 행사했을 때 학교는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뿐 아니라 이를 목격하거나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문서 등으로 관계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특히 제1항은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교는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적절한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소수자 학생이 동등한 배움의 권리와 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해야 하며, 그 방식은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을 사려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조례 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소수자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마련,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마련, 전문 상담 등의 조력,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의 편의 제공 및 교육적 지원, 가정형편으로 빈곤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의무, 다문화가정·이주민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 있어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또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를 학교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동의 없는 누설은 금지된다. 보호자에게 알리는 경우, 자살 미수 등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학생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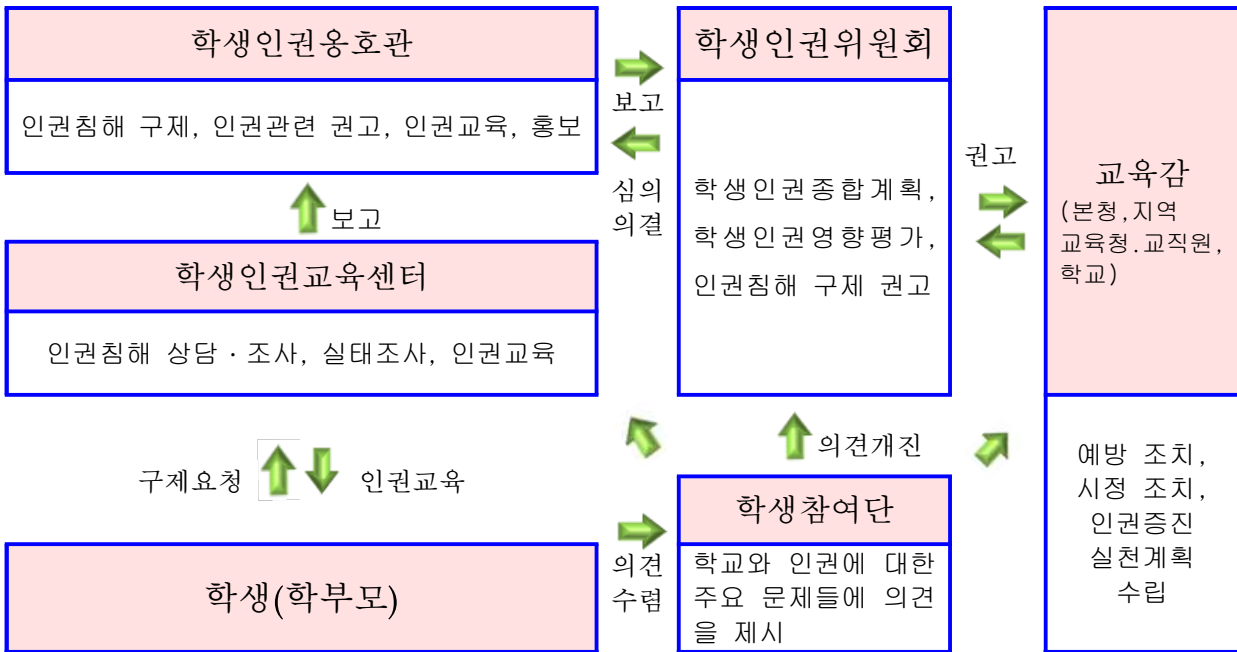


항목	상위 법령 및 근거
소수자 인권	<p>【결정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2010.12.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권 보호는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정부나 교육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함. ◎ 국가인권위원회 2007.12.13.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의 기준 마련 등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개최에 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한 대회 개최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 2011.2.1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시스템과 전, 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에서는 학생인권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로 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학생 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 조사,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구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 3절에서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 증진 체제 흐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제29조는 학생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인권교육은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이행되는데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인권교육은 1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하여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짰다.



인권교육은 인권 일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상황 즉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강당이나 체육관에 학생들을 집합시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인권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제8항의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은 형식적이고 성과주의적인 활동이 아닌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인권 학습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인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제4조 제5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참조).

특별히, 제7항에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학생의 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되지 않고,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권에 관한 것은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근로계약) ①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제30조는 인권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널리 배포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 조례와 관련한 홍보용 PPT자료, 동영상 자료의 제작과 배부, 학생인권 존중 우수사례 발굴과 자료의 일반화 추진, 업무의 혼란과 가중을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 및 배부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추상적인 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 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제31조는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학교 등 학생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을 충분히 이



해하고 있어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권 교육이 1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제4항의 보호자란 일반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등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유해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호자 교육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제32조는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날’이 형식적인 기념일이 되지 않도록, 학생, 교원 및 시민 등 교육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제33조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각 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①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 ② 지역사회 공론 형성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출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학생인권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하는 전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해설 제34조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제2항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높은 감수성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약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원이고 인권보장이기에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이와 같은 취지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제35조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학생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열리며, 위원회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기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연 4회 정도 열리는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긴급하고 다양한 구제 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혹은 일상적 협의 체계로서 소위원회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해설 제36조는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해설 제37조는 학생인권문제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학생참여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주체는 학생이고 따라서 학생 스스로 교육정책과 학생인권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참여단은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과 특별절차를 통해서 선발·위촉된 학생들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정책,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등 학교와 인권에 대한 주요 문제들에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참여기구이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제38조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옹호관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관점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함으로써, 외부의 인권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분의 보장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해설 제39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함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학생인권 관련 정책 연구·개발, 상담, 조사,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인권침해사건 구제, 인권관련 권고,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40조는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교육행정과 학생인권보장의 궁극적 책무를 지는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일반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 옹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제41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 금지를 통해 직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제42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하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를 받아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일을 수행한다.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인권센터가 수행하는 주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획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신청이 접수되거나 혹은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인권침해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구제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제도적·구조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위원회, 혹은 교육감 등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설 제43조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그것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인권위원회를 통해 평가 받고 의견을 듣게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조례나 정책을 수정, 개정, 혹은 폐기할 수 있는 자료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해설 제4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어느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현장과 교육 전반에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45조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생인권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학생인권정책의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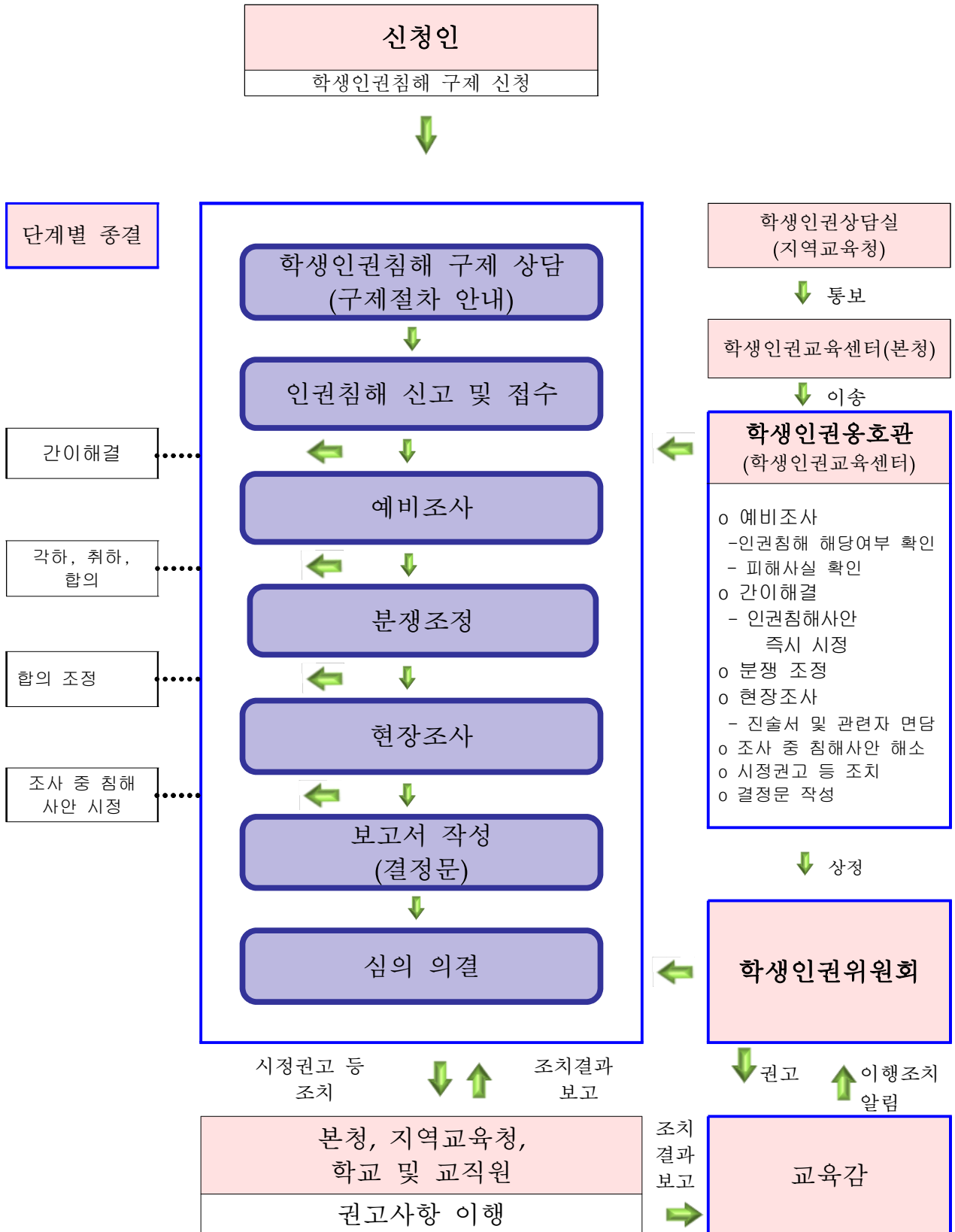
해설 제46조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수립될 수 있도록 했고,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사회활동과의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장에서는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제신청, 조사, 처리,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에는 “아동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오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러한 보호 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 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 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 처리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4장의 내용이 학생인권구제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인권침해 구제 절차】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 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해설 제47조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대한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상담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제48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인권침해조사활동에 대한 조항이다. 조사는 피해당사자의 인격이나 사생활 또는 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그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학생인권 침해사안이 중대하여 피해당사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경우 혹은 향후에 유사한 침해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를 미리 예방하게 위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는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인권옹호관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게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장소나 공간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증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 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해설 제49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사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후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으며, 조사가 끝난 후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 등에 학생인권침해행위 중지, 인권회복조치, 징계, 인권교육, 주의 등 다양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 내의 경찰 또는 법원의 위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경찰이나 법원처럼 학교 ‘밖’에서 학교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육”의 목적이란 큰 틀 안에서 학생인권의 침해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학생인권옹호관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나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강제수사와 권위적인 결정으로 인권침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방식 아니라, 일종의 ‘화해자’ 내지는 ‘조정자’로서 학생인권침해사건을 평화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안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건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인권침해사건의 구제를 위한 권고를 하는데, 이것은 권위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피권고자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실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피권고자 역시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피권고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 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제50조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성원 등에게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관계자 혹은 학교 등의 인격과 명예, 혹은 그 업무의 적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제51조는 너무 구체적이거나 세세한 내용 또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교육감 등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하는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하였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
-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6조)
-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13조)
-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제16조)
- 사.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17조)
-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
-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제38조, 제42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



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키는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체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